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서인식 조사연구

A Study on Librarians' Perception of Library User Privacy

노 영 희 (Younghee Noh)*

목 차

- | | |
|----------|---------------|
| 1. 서 론 | 4. 연구설계 및 방법론 |
| 2. 선행 연구 | 5. 결 과 |
| 3. 연구질문 | 6. 결론 및 제언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설문응답자의 의견, 도서관 기록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정도,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서 및 도서관의 노력,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교육의 필요성 등 크게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사서들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높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서관의 어떤 기록과 어떤 업무가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매우 높게 인지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도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librarians view library user privacy. To this end, a four-part survey was conducted: respondents' opinions about the privacy of library users, the degree to which library records violate the users' privacy, the role libraries and librarians fulfill to ensure user privacy protection, and librarians' need for privacy education. Results showed that librarians were very aware of privacy issues, but they perceived that library users' privacy awareness was not high. In particular, they had little knowledge of what library records or which library tasks might have the potential to violate users' privacy. In addition, awareness efforts of librarians to ensure user privacy was very low. On the other hand, the need for library user privacy educational programs was shown to be very high, and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was also relatively high.

키워드: 도서관 프라이버시, 이용자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침해, 도서관 기록

Library Privacy, User's Privacy, Privacy Violation, Library Records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논문접수일자: 2013년 7월 11일 최초심사일자: 2013년 8월 5일 게재확정일자: 2013년 8월 12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3): 73-96, 2013.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3.073]

1. 서론

도서관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 및 서비스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인화된 서비스는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필터버블 서비스가 있고, 트위터를 포함한 각종 SNS서비스가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맞춤형서비스를 개개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기관은 개인에 대한 정보를 되도록 많이 수집하여야 그 만큼 더 정교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내 위치에서 가까운 서점, 식당, 도서관을 즉시 안내 받기 위해서는 나의 위치정보를 서비스기관과 공유해야 하며, 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내가 원하는 식이나 내가 원하는 책을 추천받기 위해서는 나의 식습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나의 독서 취향을 공유해야 한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을 겪게 되거나 알게 된다면 개인정보를 기꺼이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도서관에는 어떠한 기록들이 있으며 도서관 사서들은 이러한 기록들이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얼마나 침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국내의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도서관에는 이용자의 독서습관을 알 수 있는 대출기록, 연구경향을 알 수 있는 상호대차기록 및 참고서비스 기록, 나의 행동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는 CCTV 기록, 외부업체에 의해

접근될 수 있는 개인정보기록은 물론 데이터베이스 탐색기록 등이 있다. 수십 가지가 넘는 이러한 기록들은 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기록들이며, 유출될 경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록들은 얼마 동안 누구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가? 사실 이러한 기록정보들이 얼마나 권위있고 책임있는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얼마 동안 보관되다가 폐기되는지에 대한 조사는 거의 되고 있지 않으며 보고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사서들은 이러한 개인정보들이 어느 정도 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조사도 수행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즉 도서관 사서들은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어떠한 기록들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침해하는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사서 및 도서관은 얼마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2. 선행 연구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관련 선행연구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소개되고 있으므로(노영희 2012a; 2012b; 2012c),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선행연구

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김혜선(1994)은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국내 사서들의 인식도가 일관성이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거나 프라이버시 보호의 범위와 방안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강순희(2003)는 사서 및 정보서비스직의 윤리의식 연구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혹은 대출 기록 등의 정보가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라고 대부분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보호하는 규정이나 정책을 가진 도서관이 많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외부의 검열에 의해서 이용자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도서관 이용률이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미화(2006)는 프라이버시 및 도서관 기록에 대한 이용자 인식조사에서, 이용자들이 도서관 기록의 기밀이 지켜진다면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이용자 정보의 활용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기문(2003)은 미국의 애국법(PATRIOT ACT)과 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연구에서 애국법 제215조가 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을 언급하고, 이에 따른 미국 사서들의 의식변화를 조사하였다.

임리사(2010) 등은 프라이버시를 나타내는 요소 중 시각적 프라이버시의 정도를 분석하여 열람실 좌석의 선호도와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대학도서관의 공공 열람실에서 공부할 때 이용자들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 위해 시각적 프라이버시가 높은 좌석을 선호할 것이라는 가정으로 좌석별 시각적 프라이버시의 정도와 좌석별 선호도 사이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다.

Sturges 등(2003)은 디지털도서관 기록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도서관소프트웨어관리업체와 도서관의 직원,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 기록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사서의 준비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각각의 사회집단이 프라이버시에 대해 얼마나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유용한 연구결과이다.

Klinefelter(2007)는 도서관 프라이버시와 그것의 가치, 도서관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법에 대한 해석, 도서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그녀는 도서관 서비스는 점점 정교해지고 있으며, 이용자의 독서습관 및 연구경향을 추적하여 이용자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도서관은 신착도서, 이용자 개개 관심분야의 새로운 정보자료 제공, 새롭게 구독되는 저널에 대한 정보, 그리고 책의 반납시기를 개개 이용자에게 알리는 메일 및 메시지 등의 매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용자는 이러한 편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익명성, 심지어 자기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까지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Adams(2002)는 청소년서비스담당자와 학교미디어전문가(사서교사)가 직면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의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으며,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치는 주법이나 연방법에 대한 리뷰를 제공하였다. 연구자는 이를 기반으로 학생이나 도서관 직원 모두에게 프라이버시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한

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위스콘신법은 학생들의 도서관 기록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부모나 교사는 학생의 허락 없이 학생의 대출기록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살, 감옥에 있는 부모를 갖는 것, 장애인 형제를 갖는 것 등에 대해서 검색하는 학생들의 탐색기록에 대한 부모의 브라우징 요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Fifarek(2002)은 시스템전문사서이자 네트워크 전문가로서 LSU(Louisiana State University)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정보기술적 관점에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녀는 대학도서관에서 새로운 정보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면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프라이버시 실패' 사례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프라이버시 관련법들의 명확한 측면과 불명확한 측면들에 대해서 논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사서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다소 있으나 도서관 사서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특히 도서관의 어떤 서비스와 도서관의 어떤 기록이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서 인식연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연구질문

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서들은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해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면 이에 대한 개선책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고, 특히 어떤 부분에서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이 낮은지에 대한 것도 분석해 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기반으로 연구방향을 설정하였다.

- 연구질문 1:** 사서들은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 연구질문 2:** 사서들은 현재 도서관에서 수집되고 있는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가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침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 연구질문 3:**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사서 및 도서관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 연구질문 4:** 사서는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교육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위의 연구질문에 대한 것은 설문문항으로 개발하여 조사·분석함으로써 논의를 통해 그 답변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연구설계 및 방법론

4.1 표집 방법 및 데이터 수집절차

본 설문조사는 공공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에서 진행되는 '사서직 전문성 향상 과정'에 참여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수강생인 사서들은 서울지역의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정기적인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참여한 사서이며 총 36명의 사서들이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에 참여하였다. 36명의 사서는 서울지역 30여개의 공공도서관에 소속된 사서들이며, 따라서 전국지역은 아니더라도 서울지역 여러 공공도서관의 의견을 반영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지 배포 및 회수는 직접 교육기관에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36명 전원이 응답하여 100%의 회수율을 확보하였다.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 대상자들에게 배포된 설문지의 표지(cover letter)에는 조사 목적과 조사대상자가 표본으로 추출되었음을 알리는 간단한 문장을 포함시켰다. 설문은 2013년 5월 31일에 이루어졌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통계분석을 위하여 문항별로 코딩되었다. 일차로 코딩된 데이터는 정확성을 위해 재차 설문지 원본과의 대조, 검토과정을 거쳐 집단별로 각각 하나씩, 두 개의 데이터 파일이 완성되었다.

4.2 설문 내용과 문항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설문지의 문항은 연구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하였으며, 본 연구와 유사한 논문을 참조함으로써 개개의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

첫째, 어떠한 도서관 기록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침해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개발은 노영희(2012a)의 '디지털도서관서비스기록과 이용자프라이버시에 관한 연구'를 참조하여 개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대출기록, 연체기록, 상호대차기록, 데이터베이스탐색기록 등 26개의 서비스를 나열하였고 침해정도를 '매우 적게'에서 '매우 많이'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둘째,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사서 및 도서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력의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 노영희(2012c)의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정책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연구'를 참조하였으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 정보만 수집', '이용자에 대한 모든 기록은 그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삭제' 등을 포함하여 총 16개의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전혀 중요하지 않음'부터 '매우 중요함'까지 5점 척도에 답변하도록 하였다.

셋째, 그 외 프라이버시 침해사례나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사례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보았는지,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였다. 그리고 교차분석을 위해 개인적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였다.

최종적으로 모두 5개 조사영역, 17개의 조사내용으로 구성된 설문지가 작성되었다. 설문지의 내용과 문항구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통계분석을 위하여

〈표 1〉 설문지의 내용과 문항 구성

조사영역	조사내용	문항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설문응답자의 의견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았는지	1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았는지	2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3
	도서관은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4
	도서관에서의 이용자프라이버시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5
	도서관에는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6
	도서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는 어느 정도 수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7
도서관 기록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정도	대출기록	8
	연체기록	
	상호대차기록	
	데이터베이스 탐색기록	
	원문복사요청기록	
	온라인탐색서비스기록	
	폐가도서자료신청기록	
	SDI서비스를 위한 이용자 프로파일	
	도서관 컴퓨터에서 방문한 웹사이트 방문기록	
	이메일이나 채팅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참고서비스기록	
	도서관 컴퓨터사용을 요청한 기록	
	도서관에 각종 자원을 요청한 기록	
	웹 2.0서비스 기록	
	필터블서비스 (이용자의 과거검색기록, 개인정보, 취향 등을 기반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것)	
	클라우드서비스	
	위치기반서비스	
	상황인식서비스	
	RFID 서비스	
	책추천서비스	
	CCTV 설치	
도서관 데이터 백업자료		
도서관 컴퓨터 이용기록		
도서관 컴퓨터 모니터링과 통제소프트웨어		
컴퓨터 모니터가 보여지는 개방된 공간		
주민등록번호가 요구되는 도서관자동화기기		
위의 도서관 기록들은 어느 정도 도서관에 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9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서 및 도서관의 노력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 정보만 수집	10
	이용자에 대한 모든 기록은 그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삭제	
	온라인탐색서비스를 위해 컴퓨터에 설치된 쿠키의 경우 즉시 삭제	
	도서관에서 유지되는 이용자 관련 모든 정보의 사용목적은 즉시 공지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사용을 마친 후 사용기록과 사용로그를 즉시 삭제	
	도서관 이용자의 컴퓨터를 절대로 모니터링 하지 않음	
	이용자의 화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모니터에 대한 공간적 배치를 고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도서관자동화기기를 도입하지 않음	
	CCTV 설치를 최소화하고 설치할 경우 안내판을 설치	
	이용자정보를 다루는 도서관의 모든 외부업체에 개인정보보호 주의를 줌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서교육	
	도서관의 모든 백업데이터는 다음 백업이 일어날 때까지만 보관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서직원의 수를 최소한으로 줄임	
정부기관 및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상호대차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음		
각 도서관의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및 정책을 도서관홈페이지에 게시		

조사영역	조사내용	문항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교육의 필요성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관련 교육프로그램은 귀하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유익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11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관련 세미나/강의/워크숍이 제공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12
개인적 배경	성별	13
	연령	14
	소유 자격증	15
	도서관 근무 경력	16
	가장 오랫동안 담당한 업무	17

SAS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의 문항 각각에 대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산출하였다. 기술통계를 위해서는 피셔의 정확검정을 사용하였다.

5. 결 과

5.1 인구통계학적 특징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분석하였

으며, 총 36명의 응답자 중 남자 19.4%(7명), 여자 77.8%(28명)로 나타났으며, <표 2>와 같다.

설문응답자의 연령분포는 30대에서 50대이며, 20대와 60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들이 보통 중간 관리자급부터 상급 관리자였기 때문이며 40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3> 참조).

설문응답자들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을 조사하였으며, 정사서 2급 41.7%, 준사서 55.6%로 나타났으며, 정사서 1급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표 2> 설문응답자의 성별분포

남자		여자		무응답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7	19.4	28	77.8	1	2.8	36	100

<표 3> 설문응답자의 연령분포

30대		40대		50대		무응답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2.8	29	80.6	5	13.9	1	2.8	36	100

<표 4> 설문응답자의 소유 자격증

정사서2급		준사서		무응답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5	41.7	20	55.6	1	2.8	36	100

〈표 5〉 설문응답자의 도서관 근무경력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25년 미만		25년 이상		무응답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	5.6	11	30.6	21	58.3	1	2.8	1	2.8	36	100

〈표 6〉 설문응답자가 가장 오랫동안 담당한 업무

업무 종류	빈도	비율(%)
수서업무(장서개발)	2	5.6
분류/목록(정리)업무	17	47.2
연속간행물 담당업무	2	5.6
참고봉사업무	14	38.9
상호대차업무	1	2.8
전산관련 업무	2	5.6
이용자교육업무	4	11.1
경영·기획업무	0	0
열람(대출반납)업무	15	41.7
행정(사무)업무	4	11.1
기타	5	13.9

설문응답자의 도서관 근무경력조사에서 20년 이상~25년 미만이 5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15년 이상~20년 미만이 30.6%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5〉 참조).

마지막으로 설문응답자가 가장 오랫동안 담당한 업무를 우선순위로 2개만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분류/목록 업무가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열람업무 41.7%, 참고봉사업무 38.9%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영·기획업무를 담당했던 사서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5.2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해 사서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7개의 문항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으며, 위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기반으로 교차분석도 실시하였다.

5.2.1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인식

설문응답자들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보았는지를 조사하였으며, 익숙하다가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매우 익숙하다가 27.8%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가 19.4%로 나타났으며, 매우 익숙하지 않다는 2.8%에 지나지 않았고 익숙하다는 전체적으로 77.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커트척도 결과는 평균 4.03으로 나타났으며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사서들은 매우 익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7〉 참조).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연령, 근무경력, 담당업무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분

〈표 7〉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인식

매우 익숙하다		익숙하다		보통이다		익숙하지 않다		매우 익숙하지 않다		합계		평균 및 표준편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평균	표준편차
10	27.8	18	50	7	19.4	1	2.8	0	0	36	100	4.03	0.7741

석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무경력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Fisher의 정확검정 결과 분석되었다.

먼저 연령별 분석을 보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40대가 평균 4.2로 가장 익숙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50대 3.4, 30대 3.0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무경력별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경력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20년 이상~25년 미만 4.10, 10년 이상~15년 미만 3.50 순으로 나타났다.

담당업무별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해 보았을 때, 행정(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이 평균 4.75로 가장 높은 인식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다음으로 이용자교육업무 4.25, 분류/목록(정리)업무 4.2 순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행정(사무)업무 담당사서

〈표 8〉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인식의 인구통계학적 특징과의 교차분석 결과

교차분석대상		매우 익숙하다		익숙하다		보통이다		익숙하지 않다		매우 익숙하지 않다		평균 및 표준편차		Fisher의 정확검정 (Pr <= P)
항목	세부항목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M	SD	
연령	30대	0	0	0	0	1	100	0	0	0	0	3.00	0.000	0.053
	40대	10	34.5	15	51.7	4	13.8	0	0	0	0	4.21	0.675	
	50대	0	0	3	60	1	20	1	20	0	0	3.40	0.894	
근무 경력	10년 이상~15년 미만	0	0	1	50	1	50	0	0	0	0	3.50	0.707	0.4536
	15년 이상~20년 미만	4	36.4	5	45.5	2	18.2	0	0	0	0	4.18	0.751	
	20년 이상~25년 미만	6	28.6	12	57.1	2	9.5	1	4.8	0	0	4.10	0.768	
	25년 이상	0	0	0	0	1	100	0	0	0	0	3.00	0.000	
담당 업무	수서업무(장서개발)	0	0	1	50	1	50	0	0	0	0	3.50	0.707	0.837
	분류/목록(정리)업무	4	23.5	11	64.7	2	11.8	0	0	0	0	4.12	0.600	
	연속간행물 담당업무	0	0	1	50	0	0	1	50	0	0	3.00	1.414	
	참고봉사업무	3	21.4	7	50	4	28.6	0	0	0	0	3.93	0.730	
	상호대차업무	0	0	1	100	0	0	0	0	0	0	4.00	0.000	
	전산관련 업무	0	0	2	100	0	0	0	0	0	0	4.00	0.000	
	이용자교육업무	1	25	3	75	0	0	0	0	0	0	4.25	0.500	
	경영·기획업무	0	0	0	0	0	0	0	0	0	0	0	0	
	열람(대출반납)업무	2	13.3	9	60	3	20	1	6.7	0	0	3.80	0.775	
	행정(사무)업무	3	75	1	25	0	0	0	0	0	0	4.75	0.500	
기타	2	40	2	40	1	20	0	0	0	0	4.20	0.837		

의 경우 개인정보관련 민원처리를 하거나 개인 정보관련 행정문서를 처리한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높은 인식도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5.2.2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인식

설문응답자들이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보았는지를 조사하였으며, 보통이다가 5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익숙하다가 22.2%로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사서들은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30.5%만이 익숙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일반적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77.8%에 비해 상당히 낮은 인식을 보여 주고 있었다.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3.25로 나타났으며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해 보통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표 9〉 참조).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사서들은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익숙한 반면,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연령, 근무경력, 담당업무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집단 간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별 분석을 보면 도서관 이용자 프라

이버시 침해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서 50대가 평균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40대가 평균 3.21, 30대 3.0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무경력별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경력 15년 이상~20년 미만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20년 이상~25년 미만 4.1, 10년 이상~15년 미만 3.5 순으로 나타났다.

담당업무별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해 보았을 때, 이용자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이 평균 3.75로 가장 높은 인식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업무 3.25, 대출반납업무 3.2 순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5.2.3 응답자의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관심정도

설문응답자들이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관심이 매우 적다는 한 명도 없었으며, 관심이 없다는 5.6%로 나타났다. 반면에 응답자의 47.2%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5점 척도 평균도 3.56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응답자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연령, 근무경력, 담당업무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

〈표 9〉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인식

매우 익숙하다		익숙하다		보통이다		익숙하지 않다		매우 익숙하지 않다		합계		평균 및 표준편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평균	표준편차
3	8.3	8	22.2	21	58.3	3	8.3	1	2.8	36	100	3.25	0.8409

<표 10>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인식의 인구통계학적 특징과의 교차분석 결과

교차분석대상		매우 익숙하다		익숙하다		보통이다		익숙하지 않다		매우 익숙하지 않다		평균 및 표준편차		Fisher의 정확검정 (Pr <= P)
항목	세부항목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M	SD	
연령	30대	0	0	0	0	1	100	0	0	0	0	3.00	0	0.9269
	40대	3	10.3	5	17.2	17	58.6	3	10.3	1	3.4	3.21	0.902	
	50대	0	0	2	40	3	60	0	0	0	0	3.40	0.548	
근무 경력	10년 이상~15년 미만	0	0	1	50	1	50	0	0	0	0	3.5	0.707	0.7143
	15년 이상~20년 미만	1	9.1	1	9.1	6	54.5	2	18.2	1	9.1	2.909	1.044	
	20년 이상~25년 미만	2	9.5	5	23.8	13	61.9	1	4.8	0	0	3.381	0.74	
	25년 이상	0	0	0	0	1	100	0	0	0	0	3	0	
담당 업무	수서업무(장서개발)	0	0	0	0	2	100	0	0	0	0	3	0	0.957
	분류/목록(정리)업무	1	5.9	4	23.5	9	52.9	3	17.6	0	0	3.176	0.809	
	연속간행물 담당업무	0	0	0	0	2	100	0	0	0	0	3	0	
	참고봉사업무	0	0	2	14.3	12	85.7	0	0	0	0	3.143	0.363	
	상호대차업무	0	0	0	0	1	100	0	0	0	0	3	0	
	전산관련 업무	0	0	0	0	2	100	0	0	0	0	3	0	
	이용자교육업무	1	25	1	25	2	50	0	0	0	0	3.75	0.957	
	경영·기획업무	0	0	0	0	0	0	0	0	0	0	0	0	
	열람(대출반납)업무	2	13.3	2	13.3	8	53.3	3	20	0	0	3.2	0.941	
	행정(사무)업무	1	25	1	25	1	25	0	0	1	25	3.25	1.708	
	기타	0	0	1	20	4	80	0	0	0	0	3.2	0.447	

<표 11> 응답자의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관심정도

관심이 매우 많다		관심이 많다		보통이다		관심이 없다		관심이 매우 적다		합계		평균 및 표준편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5	13.9	12	33.3	17	47.2	2	5.6			36	100	3.56	0.8087

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집단 간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별 분석을 보면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40대가 평균 3.59로 가장 높은 관심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50대가 3.40, 30대 3.00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경력별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관심정도를 분석하였으며, 경력이 많을수록 높은

관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업무별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관심차이를 분석해 보았을 때, 이용자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가 평균 3.75로 가장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었고, 다음으로 참고봉사업무 담당자 3.64, 전산담당자 및 행정사무업무담당자 각각 3.50순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표 12>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관심정도의 인구통계학적 특징과의 교차분석 결과

교차분석대상		관심이 매우 많다		관심이 많다		보통이다		관심이 적다		평균 및 표준편차		Fisher의 정확검정 (Pr <= P)
항목	세부항목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M	SD	
연령	30대	0	0	0	0	1	100	0	0	3.00	0.000	0.9424
	40대	5	17.2	9	31	13	44.8	2	6.9	3.59	0.867	
	50대	0	0	2	40	3	60	0	0	3.40	0.548	
근무 경력	10년 이상~15년 미만	0	0	0	0	2	100	0	0	3.00	0.000	0.4093
	15년 이상~20년 미만	0	0	5	45.5	5	45.5	1	9.1	3.36	0.674	
	20년 이상~25년 미만	5	23.8	5	23.8	10	47.6	1	4.8	3.67	0.913	
	25년 이상	0	0	1	100	0	0	0	0	4.00	0.000	
담당 업무	수서업무(장서개발)	0	0	1	50	0	0	1	50	3.00	1.414	
	분류/목록(정리)업무	1	5.9	7	41.2	8	47.1	1	5.9	3.47	0.717	
	연속간행물 담당업무	0	0	0	0	2	100	0	0	3.00	0.000	
	참고봉사업무	2	14.3	5	35.7	7	50	0	0	3.64	0.745	
	상호대차업무	0	0	0	0	1	100	0	0	3.00	0.000	
	전산관련 업무	0	0	1	50	1	50	0	0	3.50	0.707	
	이용자교육업무	1	25	1	25	2	50	0	0	3.75	0.957	
	경영·기획업무	0	0	0	0	0	0	0	0	0	0	
	열람(대출반납)업무	2	13.3	3	20	8	53.3	2	13.3	3.33	0.900	
	행정(사무)업무	1	25	0	0	3	75	0	0	3.50	1.000	
기타	0	0	2	40	3	60	0	0	3.40	0.548		

5.2.4 소속도서관의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관심정도

응답자가 소속된 도서관은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관심이 없다는 8.3%로 개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관심이 많다는 58.3%로 사서들 개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5점 척도 평균은 3.68로 나타났으며 역시 사서들 개인들보다 도서관이

평균적으로 약간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무응답은 1명이다(<표 13> 참조).

소속도서관이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연령, 근무경력, 담당업무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집단 간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별 분석을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응

<표 13> 소속도서관의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관심정도

관심이 매우 많다		관심이 많다		보통이다		관심이 없다		관심이 매우 적다		합계		평균 및 표준편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5	13.9	16	44.4	11	30.6	3	8.3	0	0	36	100	3.68	0.8387

답자는 본인의 소속도서관이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력이 10년 이상~15년 미만인 응답자와 25년 이상의 응답자, 그리고 담당업무가 참고봉사업무, 상호대차업무, 전산 관련 업무인 사서가 높은 관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5.2.5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설문응답자는 도서관에서의 이용자 프라이버시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보통이다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점 척도 평균은 3.33으로 보통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서는 27.8%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집단 간 큰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및 경력별 차이를 보았을 때, 40대가 평균 3.35로, 그리고 경력이 20년 이상~25년 미만이 평균 3.33으로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우려를 보여주었다. 담당업무별로 보았을 때는 분류/목록(정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가 3.3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용자교육업무와 행정(사무)업무가 각각 3.25, 참고봉사업무 3.21순으로 나타났다(<표 16> 참조).

<표 14> 소속도서관의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관심정도의 인구통계학적 특징과의 교차분석 결과

항목	교차분석대상 세부항목	관심이 매우 많다		관심이 많다		보통이다		관심이 적다		평균 및 표준편차		Fisher의 정확검정 (Pr <= P)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M	SD	
연령	30대	0	0	1	100	0	0	0	0	4.00	0.000	0.908
	40대	5	17.2	12	41.4	8	27.6	3	10	3.68	0.905	
	50대	0	0	3	60	2	40	0	0	3.60	0.548	
근무 경력	10년 이상~15년 미만	0	0	2	100	0	0	0	0	4.00	0.000	0.8205
	15년 이상~20년 미만	1	9.1	6	54.5	2	18.2	1	9	3.70	0.823	
	20년 이상~25년 미만	4	19	7	33.3	8	38.1	2	10	3.62	0.921	
	25년 이상	0	0	1	100	0	0	0	0	4.00	0.000	
담당 업무	수서업무(장서개발)	0	0	1	50	0	0	1	50	3.00	1.414	
	분류/목록(정리)업무	2	11.8	9	52.9	4	23.5	2	12	3.65	0.862	
	연속간행물 담당업무	0	0	1	50	1	50	0	0	3.50	0.707	
	참고봉사업무	2	14.3	9	64.3	2	14.3	0	0	4.00	0.577	
	상호대차업무	0	0	1	100	0	0	0	0	4.00	0.000	
	전산관련 업무	0	0	2	100	0	0	0	0	4.00	0.000	
	이용자교육업무	0	0	3	75	1	25	0	0	3.75	0.500	
	경영·기획업무	0	0	0	0	0	0	0	0	0	0	
	열람(대출반납)업무	2	13.3	6	40	5	33.3	2	13	3.53	0.915	
	행정(사무)업무	1	25	0	0	3	75	0	0	3.50	1.000	
기타	0	0	3	60	2	40	0	0	3.60	0.548		

〈표 15〉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매우 심각하다		심각하다		보통이다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합계		평균 및 표준편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평균	표준편차
4	11.1	6	16.7	24	66.7	2	5.6	0	0	36	100	3.33	0.7559

〈표 16〉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인구통계학적 특징과의 교차분석 결과

교차분석대상		매우 심각하다		심각하다		보통이다		심각하지 않다		평균 및 표준편차		Fisher의 정확검정 (Pr <= P)
항목	세부항목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M	SD	
연령	30대	0	0	0	0	1	100	0	0	3.00	0.000	0.5767
	40대	3	10.3	5	17.2	20	69	1	3.4	3.35	0.721	
	50대	0	0	1	20	3	60	1	20	3.00	0.707	
근무 경력	10년 이상~15년 미만	0	0	0	0	2	100	0	0	3.00	0.000	1
	15년 이상~20년 미만	1	9.1	2	18.2	7	63.6	1	9.1	3.27	0.786	
	20년 이상~25년 미만	2	9.5	4	19	14	66.7	1	4.8	3.33	0.730	
	25년 이상	0	0	0	0	1	100	0	0	3.00	0.000	
담당 업무	수서업무(장서개발)	0	0	0	0	2	100	0	0	3.00	0.000	
	분류/목록(정리)업무	3	17.6	1	5.9	12	70.6	1	5.9	3.35	0.862	
	연속간행물 담당업무	0	0	0	0	1	50	1	50	2.50	0.707	
	참고봉사업무	1	7.1	2	14.3	10	71.4	1	7.1	3.21	0.699	
	상호대차업무	0	0	0	0	1	100	0	0	3.00	0.000	
	전산관련 업무	0	0	0	0	2	100	0	0	3.00	0.000	
	이용자교육업무	0	0	1	25	3	75	0	0	3.25	0.500	
	열람(대출반납)업무	1	6.7	1	6.7	12	80	1	6.7	3.13	0.640	
	행정(사무)업무	0	0	1	25	3	75	0	0	3.25	0.500	
기타	0	0	2	40	3	60	0	0	3.40	0.548		

5.2.6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데이터 보유정도에 대한 인식

설문응답자들이 보기에 도서관에는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보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많다가 58.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5점 척도 평균은 3.58 정도로 나타났다. 반면에 적다고 응답한 비율은 8.4%로 나타나고 있어, 사서들은 도서관의 데이터 보유량이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표 17〉 참조).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데이터 보유정도에 대한 인식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집단 간 큰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및 경력별 차이를 보았을 때, 40대가 평균 3.62로, 경력이 15년 이상~20년 미만이 평균 3.82로, 그리고 행정(사무)업무 담당사서가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8〉 참조).

〈표 17〉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데이터 보유정도에 대한 인식

매우 많다		많다		보통이다		적다		매우 적다		합계		평균 및 표준편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평균	표준편차
3	8.3	18	50	12	33.3	1	2.8	2	5.6	36	100	3.58	0.9098

〈표 18〉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데이터 보유정도에 대한 인식의 인구통계학적 특징과의 교차분석 결과

교차분석대상		매우 많다		많다		보통이다		적다		매우 적다		평균 및 표준편차		Fisher의 정확검정 (Pr <= P)
항목	세부항목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M	SD	
연령	30대	0	0	0	0	1	100	0	0	0	0	3.00	0.000	0.1978
	40대	3	10.3	14	48.3	11	37.9	0	0	1	3	3.62	0.820	
	50대	0	0	4	80	0	0	0	0	1	20	3.40	1.342	
근무 경력	10년 이상~15년 미만	0	0	1	50	1	50	0	0	0	0	3.50	0.707	0.3351
	15년 이상~20년 미만	2	18.2	5	45.5	4	36.4	0	0	0	0	3.82	0.751	
	20년 이상~25년 미만	1	4.8	12	57.1	7	33.3	0	0	1	5	3.57	0.811	
	25년 이상	0	0	0	0	0	0	0	0	1	100	1.00	0.000	
담당 업무	수서업무(장서개발)	0	0	0	0	1	50	0	0	1	50	2.00	1.414	
	분류/목록(정리)업무	1	5.9	11	64.7	5	29.4	0	0	0	0	3.77	0.562	
	연속간행물 담당업무	0	0	2	100	0	0	0	0	0	0	4.00	0.000	
	참고봉사업무	0	0	7	50	6	42.9	0	0	1	7	3.36	0.842	
	상호대차업무	0	0	0	0	1	100	0	0	0	0	3.00	0.000	
	전산관련 업무	0	0	0	0	2	100	0	0	0	0	3.00	0.000	
	이용자교육업무	0	0	1	25	3	75	0	0	0	0	3.25	0.500	
	경영·기획업무	0	0	0	0	0	0	0	0	0	0	0	0	
	열람(대출반납)업무	1	6.7	6	40	6	40	0	0	2	13	3.27	1.100	
	행정(사무)업무	2	50	1	25	1	25	0	0	0	0	4.25	0.957	
기타	0	0	2	40	3	60	0	0	0	0	3.40	0.548		

5.2.7 수집되어야 할 이용자 데이터량에 대한 인식

도서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는 어느 정도 수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보통이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용자 정보를 많이 수집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7.8%로 나타났고 적게 수집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5%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 평균은 2.94로 나타났다(〈표 19〉 참조).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사서들은 도서관에 보관된 이용자에 대한 기록이 이용자의 프

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이용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록을 최대한 많이 수집해서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를 고려하여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는 어느 정도 수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경력이 적을수록 최대한 적게 수집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담당업무별로 보았을 때, 이용자교육업무 담당자가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참고봉사

〈표 19〉 수집되어야 할 이용자 데이터량에 대한 인식

최대한 많이		많이		보통		적게		최대한 적게		합계		평균 및 표준편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평균	표준편차
1	2.8	9	25	17	47.2	5	13.9	4	11.1	36	100	2.94	0.9840

〈표 20〉 수집되어야 할 이용자 데이터량에 대한 인식의 인구통계학적 특징과의 교차분석 결과

교차분석대상		최대한 많이		많이		보통		적게		최대한 적게		평균 및 표준편차		Fisher의 정확검정 (Pr <= P)
항목	세부항목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M	SD	
연령	30대	0	0	0	0	1	100	0	0	0	0	3.00	0.000	0.7327
	40대	1	3.4	8	27.6	13	44.8	3	10.3	4	14	2.97	1.052	
	50대	0	0	1	20	2	40	2	40	0	0	2.80	0.837	
근무 경력	10년 이상~15년 미만	0	0	1	50	1	50	0	0	0	0	3.50	0.707	0.921
	15년 이상~20년 미만	0	0	3	27.3	6	54.5	2	18.2	0	0	3.09	0.701	
	20년 이상~25년 미만	1	4.8	5	23.8	8	38.1	3	14.3	4	19	2.81	1.167	
	25년 이상	0	0	0	0	1	100	0	0	0	0	3.00	0.000	
담당 업무	수서업무(장서개발)	0	0	0	0	0	0	2	100	0	0	2.00	0.000	
	분류/목록(정리)업무	0	0	5	29.4	8	47.1	2	11.8	2	12	2.94	0.966	
	연속간행물 담당업무	0	0	0	0	0	0	2	100	0	0	2.00	0.000	
	참고봉사업무	0	0	3	21.4	9	64.3	1	7.1	1	7	3.00	0.784	
	상호대차업무	0	0	0	0	1	100	0	0	0	0	3.00	0.000	
	전산관련 업무	0	0	0	0	1	50	0	0	1	50	2.00	1.414	
	이용자교육업무	1	25	1	25	1	25	0	0	1	25	3.25	1.708	
	경영·기획업무	0	0	0	0	0	0	0	0	0	0	0	0	
	열람(대출반납)업무	1	6.7	3	20	5	33.3	4	26.7	2	13	2.80	1.146	
	행정(사무)업무	0	0	0	0	3	75	0	0	1	25	2.50	1.000	
기타	0	0	2	40	3	60	0	0	0	0	3.40	0.548		

업무와 상호대차업무 담당자가 각각 3.00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인식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0〉 참조).

5.3 도서관 기록의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도서관 기록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어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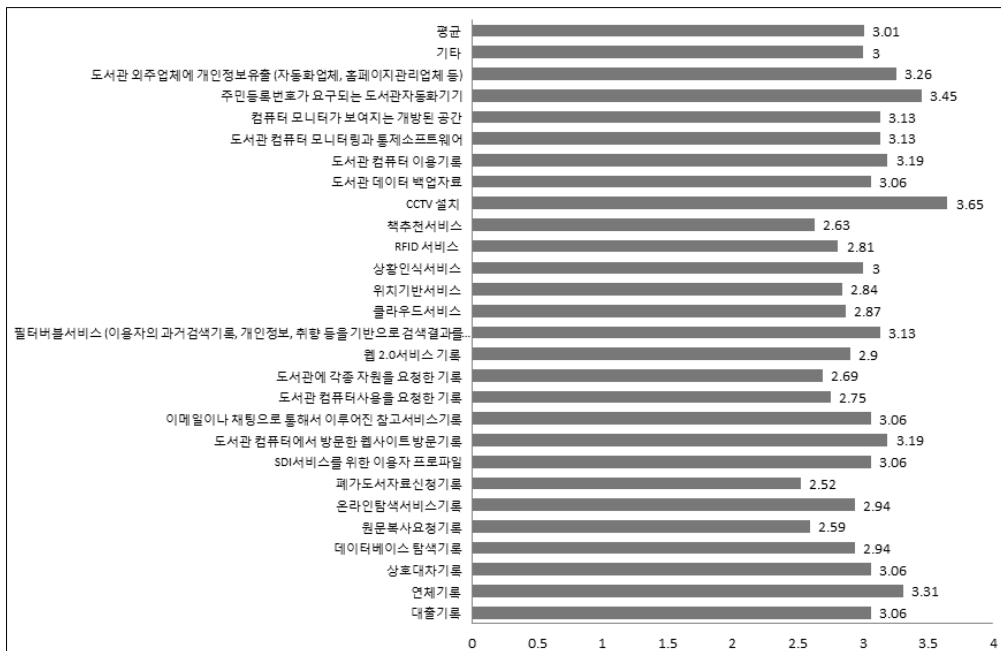
정도 침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기타를 포함하여 26개의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26개의 문항에 대한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 a) 결과, 전체 신뢰도는 0.9898로 거의 1에 가깝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26개의 항목에 대한 리커트 5점 척도 평균은 3.01로 나타났으며, 이로 보아 사서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을 보통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각의 도서관 기록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많이 또는 매우 많이 침해할 것이라는 것의 평균은 21.2%로 나타났고, 적게 또는 매우 적게 침해할 것이라는 것의 평균은 22.7%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등장한 비교적 생소한 용어에 대한 부분에서 이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무응답자는 잘 모르겠다는 항목이 있었을 경우 거기에 응답했을 응답자들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무응답에 체크한 응답자들을 분석해 보았을 때 다른 부분에서는 비교적 성실하게 응답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들은 생소한 용어나 너무나 익숙한 이용자 데이터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

할까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무응답으로 남겨 놓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도서관 기록의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서 그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CCTV 설치에 의한 데이터 수집이었으며 3.6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요구되는 도서관자동화기기 3.45, 연체기록 3.31, 도서관 외주업체에 개인정보유출(자동화업체, 홈페이지관리업체 등) 3.26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가장 적게 침해할 도서관 기록으로는 폐가도서자료 신청 기록 2.52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원문복사요청기록 2.59, 책추천서비스 2.63, 도서관에 각종 자료를 요청한 기록 2.69, 도서관 컴퓨터사용을 요청한 기록 2.75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그림 1〉, 〈표 21〉 참조).



〈그림 1〉 도서관 기록의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

〈표 21〉 도서관 기록의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

항목	무응답		매우 적게		적게		보통		많이		매우 많이		평균 및 표준편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평균	표준편차
대출기록	1	2.8	5	13.9	4	11.1	13	36.1	10	27.8	3	8.3	3.06	1.1617
연체기록	1	2.8	2	5.6	6	16.7	11	30.6	11	30.6	5	13.9	3.31	1.1054
상호대차기록	3	8.3	1	2.8	9	25	13	36.1	7	19.4	3	8.3	3.06	0.9981
데이터베이스 탐색기록	4	11.1	4	11.1	5	13.9	15	41.7	5	13.9	3	8.3	2.94	1.1053
원문복사요청기록	4	11.1	4	11.1	8	22.2	18	50	1	2.8	1	2.8	2.59	0.8747
온라인탐색서비스기록	4	11.1	2	5.6	6	16.7	18	50	4	11.1	2	5.6	2.94	0.9136
폐가도서자료신청기록	5	13.9	4	11.1	9	25	17	47.2	0	0	1	2.8	2.52	0.8513
SDI서비스를 위한 이용자 프로파일	5	13.9	2	5.6	6	16.7	14	38.9	6	16.7	3	8.3	3.06	1.0307
도서관 컴퓨터에서 방문한 웹사이트 방문기록	4	11.1	1	2.8	7	19.4	14	38.9	5	13.9	5	13.9	3.19	1.0607
이메일이나 채팅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참고서비스기록	4	11.1	1	2.8	6	16.7	18	50	4	11.1	3	8.3	3.06	0.9136
도서관 컴퓨터사용을 요청한 기록	4	11.1	1	2.8	10	27.8	18	50	2	5.6	1	2.8	2.75	0.7620
도서관에 각종 자료를 요청한 기록	4	11.1	2	5.6	8	22.2	21	58.3			1	2.8	2.69	0.7378
웹 2.0서비스 기록	5	13.9	2	5.6	7	19.4	16	44.4	4	11.1	2	5.6	2.90	0.9436
필터비블서비스(이용자의 과거검색 기록, 개인정보, 취향 등을 기반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것)	5	13.9	2	5.6	4	11.1	15	41.7	8	22.2	2	5.6	3.13	0.9571
클라우드서비스	5	13.9	4	11.1	5	13.9	14	38.9	7	19.4	1	2.8	2.87	1.0244
위치기반서비스	5	13.9	4	11.1	5	13.9	17	47.2	2	5.6	3	8.3	2.84	1.0676
상황인식서비스	7	19.4	1	2.8	4	11.1	19	52.8	4	11.1	1	2.8	3.00	0.7559
RFID 서비스	5	13.9	1	2.8	9	25	17	47.2	3	8.3	1	2.8	2.81	0.7924
책추천서비스	6	16.7	4	11.1	7	19.4	15	41.7	4	11.1			2.63	0.8899
CCTV 설치	5	13.9			4	11.1	11	30.6	8	22.2	8	22.2	3.65	1.0181
도서관 데이터 백업자료	5	13.9	1	2.8	3	8.3	23	63.9	1	2.8	3	8.3	3.06	0.8139
도서관 컴퓨터 이용기록	5	13.9	1	2.8	4	11.1	17	47.2	6	16.7	3	8.3	3.19	0.9099
도서관 컴퓨터 모니터링과 통제소프트웨어	6	16.7	1	2.8	4	11.1	16	44.4	8	22.2	1	2.8	3.13	0.8193
컴퓨터 모니터가 보여지는 개방된 공간	5	13.9	1	2.8	3	8.3	20	55.6	5	13.9	2	5.6	3.13	0.8059
주민등록번호가 요구되는 도서관자 동화기기	5	13.9	2	5.6	1	2.8	13	36.1	11	30.6	4	11.1	3.45	0.9946
도서관 외주업체에 개인정보유출(자동화업체, 홈페이지관리업체 등)	5	13.9	2	5.6	3	8.3	13	36.1	11	30.6	2	5.6	3.26	0.9650
기타	25	69.4	1	2.8	1	2.8	6	16.7	3	8.3			3.00	0.8944
평균	5.26	14.6	2.15	6.00	5.48	15.2	15.6	43.4	5.38	15.6	2.56	7.1	3.01	0.9321

위의 도서관 기록들은 어느 정도 도서관에 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영구보관이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약 6개월 정도 보관 19.4%, 약 12개

월 정도 보관 16.7%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내용은 도서관 통계를 위해 사용된 후에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표 2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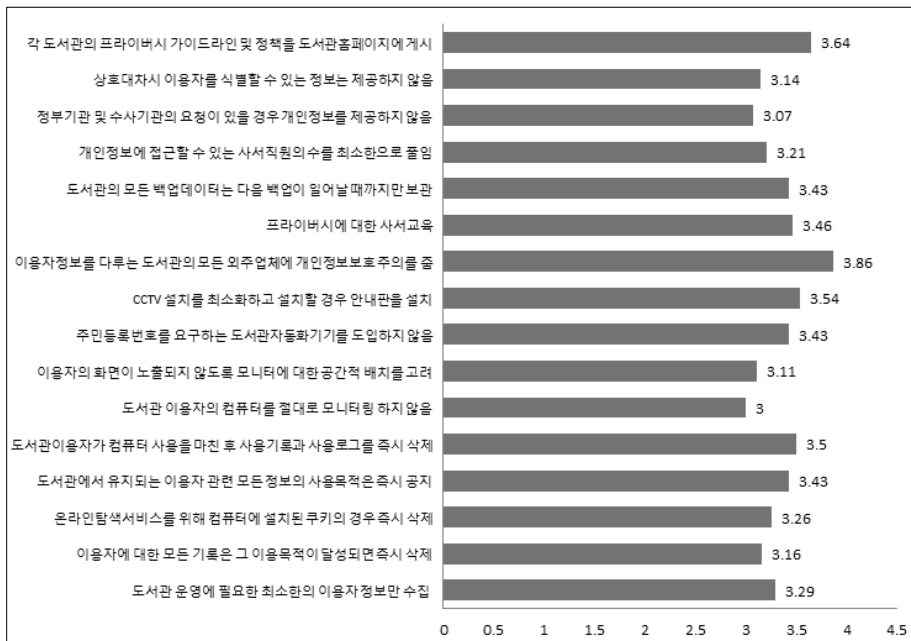
〈표 22〉 수집된 이용자 데이터의 보관기관

무응답		서비스 종료 후 즉시 폐기		약 6개월 정도 보관		약 12개월 정도 보관		영구보관		기타		평균 및 표준편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4	11.1	2	5.6	7	19.4	6	16.7	11	30.6	6	16.7	2.63	1.2115

5.4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노력

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사서 및 도서관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16개 항목의 평균은 3.35로 중요함 쪽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이용자정보를 다루는 도서관의 모든 외주업체에 개인정보보호 주의를 주는 것의 중요성이 3.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각 도서관의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및 정책을 도서관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 3.64, CCTV 설치를 최소화하고 설치할 경우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 3.54,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사용을 마친 후 사용기록과 사용로그를 즉시 삭제가 3.5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낮게 나타난 항목은 도서관 이용자의 컴퓨터를 절대로 모니터링 하지 않는 것이 3.0으로 나타났다(〈그림 2〉, 〈표 23〉 참조).



〈그림 2〉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노력에 대한 인식

〈표 23〉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노력에 대한 인식

항목	모르겠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평균 및 표준편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평균	표준편차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 정보만 수집	5	13.9	2	5.6	4	11.1	13	36.1	7	19.4	5	13.9	3.29	1.1013
이용자에 대한 모든 기록은 그 이용목적에 달성되면 즉시 삭제	5	13.9	2	5.6	6	16.7	13	36.1	5	13.9	5	13.9	3.16	1.1283
온라인탐색서비스를 위해 컴퓨터에 설치된 쿠키의 경우 즉시 삭제	5	13.9	2	5.6	6	16.7	13	36.1	2	5.6	8	22.2	3.26	1.2374
도서관에서 유지되는 이용자 관련 모든 정보의 사용목적은 즉시 공지	6	16.7	2	5.6	4	11.1	10	27.8	7	19.4	7	19.4	3.43	1.1943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사용을 마친 후 사용기록과 사용로그를 즉시 삭제	8	22.2	2	5.6	3	8.3	10	27.8	5	13.9	8	22.2	3.50	1.2323
도서관 이용자의 컴퓨터를 절대로 모니터링 하지 않음	8	22.2	4	11.1	5	13.9	10	27.8	5	13.9	4	11.1	3.00	1.2472
이용자의 화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모니터에 대한 공간적 배치를 고려	8	22.2	3	8.3	4	11.1	11	30.6	7	19.4	3	8.3	3.11	1.1333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도서관자 동화기기를 도입하지 않음	8	22.2	2	5.6	2	5.6	13	36.1	4	11.1	7	19.4	3.43	1.1684
CCTV 설치를 최소화하고 설치할 경우 안내판을 설치	8	22.2	1	2.8	3	8.3	12	33.3	4	11.1	8	22.2	3.54	1.1380
이용자정보를 다루는 도서관의 모든 외부업체에 개인정보보호 주의를 줌	8	22.2	1	2.8	0	0	10	27.8	8	22.2	9	25	3.86	1.0079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서교육	8	22.2	2	5.6	1	2.8	11	30.6	10	27.8	4	11.1	3.46	1.0357
도서관의 모든 백업데이터는 다음 백업이 일어날 때까지만 보관	8	22.2	2	5.6	1	2.8	14	38.9	5	13.9	6	16.7	3.43	1.1031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서직원의 수를 최소한으로 줄임	8	22.2	3	8.3	2	5.6	13	36.1	6	16.7	4	11.1	3.21	1.1339
정부기관 및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9	25	3	8.3	2	5.6	15	41.7	4	11.1	3	8.3	3.07	1.0715
상호대차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음	8	22.2	3	8.3	2	5.6	15	41.7	4	11.1	4	11.1	3.14	1.1127
각 도서관의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및 정책을 도서관홈페이지에 게시	8	22.2	2	5.6	1	2.8	12	33.3	3	8.3	10	27.8	3.64	1.2237
평균	7.38	20.5	2.25	6.27	2.88	8.00	12.2	33.9	5.38	15.0	5.9	16.5	3.35	1.1418

5.5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관련 교육에 대한 수요분석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관련 교육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두 개의 문항을 제시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관련 교육프로그램은 사서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유익할 것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평균은 3.8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66.7%가 긍정적으로

〈표 24〉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업무 수행상 유의성에 대한 인식

무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합계		평균 및 표준편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4	11.1	4	11.1	20	55.6	7	19.4	1	2.8	36	100	3.84	0.6773

〈표 25〉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관련 세미나/강의/워크숍 참여의사

무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합계		평균 및 표준편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4	11.1	4	11.1	17	47.2	11	30.6	36	100	3.78	0.6592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표 24〉 참조).

둘째,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관련 세미나/강의/워크숍이 제공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평균은 3.78로 나타났다. 그렇다나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58.3%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서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5〉 참조).

에서 수행된 프라이버시 관련 연구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인식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을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설문응답자의 의견, 도서관 기록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정도,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서 및 도서관의 노력,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교육의 필요성 인식 등 크게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분석결과를 연구질문에서 제기되었던 질문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사서들이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몇 개의 문항으로 분석하였을 때, 평균이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즉 사서들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는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평균 4.03)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평균 3.25),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서는 3.68 정도의

6. 결론 및 제언

6.1 논의 및 결론

일반적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국내의 경우 포괄적으로 수행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관심이 있으며, 심각성은 3.33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사서들은 일반적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지 못해서, 관심도 낮고 그 심각성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사서들은 현재 도서관에서 수집되고 있는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가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그다지 크게 침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서들은 도서관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만한 데이터가 그다지 많지 않고,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수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도서관 기록의 예를 26개 항목으로 제시하였을 때 평균이 3.01로 나타나, 사서들은 대부분의 도서관 기록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뉴스나 문헌을 통해서 소개되었던 CCTV 설치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사례로 인해 CCTV에 의해 수집된 도서관 기록이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사서 및 도서관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사서들은 평균 3.35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용자 정보를 다루는 도서관의 모든 외주업체에게 개인정보보호 주의를 주는 것, 각 도서관의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및 정책을 도서관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 CCTV 설치를 최소화하고 설치할 경우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사서는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교육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관련 교육프로그램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유익할 것이라 응답한 비율이 평균은 3.8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관련 세미나/강의/워크숍이 제공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비율은 3.78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사서들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도서관의 어떤 기록과 어떤 업무가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매우 높게 인지하고 있으며, 참여할 의사도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6.2 향후연구제안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연구결과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사서들은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으나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설문집단의 크기가 작아서 연구성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에 다음과 같은 연구가 수행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공공도서관 사서뿐만이 아니라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그리고 전문도서관 등 여러 관종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관련 인식조사를 수행하고 각각의 관중에 대한 대처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관중에 따라 다루고 있는 이용자 정보가 다르고 이용자 대상 서비스 내용도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서 이용자가 자신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도서관에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도서관 사서 대상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교육 전후의 효과를 측정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1] 강순희. 2003. 사서 및 정보서비스직의 윤리의식에 관한 연구. 『시민과 도서관』, 4(4): 20-59.
- [2] 김기문. 2003. 미국의 애국법(Patriot Act)과 도서관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시민과 도서관』, 4(4): 60-71.
- [3] 김혜선. 1994. 『사서직 윤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4] 노영희. 2012a. 디지털도서관서비스기록과 이용자프라이버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9(3): 187-214.
- [5] 노영희. 2012b. 도서관의 이용자맞춤형서비스와 프라이버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3): 353-384.
- [6] 노영희. 2012c.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정책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4): 207-242.
- [7] 이미화. 2006. 프라이버시 및 도서관 기록에 대한 이용자 인식조사. 『사대도협회지』, 7: 225-240.
- [8] 임리사, 변나향, 최재필, 임승빈. 2010. 대학도서관 열람실 시각적 프라이버시와 좌석번호도의 관계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6(5): 139-147.
- [9] Adams, Helen R. 2002. "Privacy & Confidentiality: Now More Than Ever Youngsters Need to Keep Their Library Use Under Wraps." *American Libraries*, Nov.: 44-48.
- [10] Fifarek, Aimee. 2002. "Technology and Privacy in the Academic Library." *Online Information Review*, 26(6): 366-374.

- [11] Klinefelter, Anne. 2007. "Privacy and Library Public Services: Or, I Know What You Read Last Summer." *Legal Reference Services Quarterly*, 26(1-2): 253-279.
- [12] Sturges, Paul, Eric Davies, James Dearnley, Ursula Iliffe, Ursula Iliffe, Charles Oppenheim, & Rachel Hardy. 2003. "User privacy in the digital library environment: an investigation of policies and preparedness." *Library Management*, 24(1-2): 44-50.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ang, Sun-Hui. 2003. "A study on ethic of librarians and information services job." *Library with People*, 4(4): 20-59.
- [2] Kim, Gi-Mun. 2003. "Patriot Act of United States and the library user privacy." *Library with People*, 4(4): 60-71.
- [3] Kim, Hye-Sun. 1994. *A Study on Ethics in Librarianship*. M.A.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4] Noh, Younghee 2012a. "A study of digital library service records and user priva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9(3): 187-214.
- [5] Noh, Younghee. 2012b. "A study of personalized user services and privacy in the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3): 353-384.
- [6] Noh, Younghee. 2012c. "A Study on Developing and Proposing the Library Privacy Poli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4): 207-242.
- [7] Lee, Mi-Hwa. 2006. "A study on user perceptions about privacy and library records." *The Journal of the Korean Private University Library Association*, 7: 225-240.
- [8] Lim, Lisa, Byun, Na-Hyang, Choi, Jae-Pil, & Im, Seung-Bin. 2010.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Visual Privacy and Preference of Seats of University Library."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6(5): 139-147.